

<u>『퇴직연금정기예금』상품설명서</u>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실제 계약은 **퇴직연금정기에금특약, 거칙식에금약관 및** 에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■ 상품명: 퇴직연금정기에금

■ 상품특징 :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위한 전용예금입니다.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.

□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에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<u>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등장 또는 중서에 따릅니다.</u>			
구 분	ч	8	
가 입 자 격	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		
가 입 금 액	1원이상		
가 입 기 간	1개월이상 24개월 이하, 3년, 5년		
이 율	(%) ☞ 신규가입일 및 갱신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		
	1개월 미만: 연0.1%	3개월미만 : 연0.5%	
중도 해지이율 (2012.02.01기준)	3개월이상:0.5%+([A]*60%*[B])	[A]기본이율: 신규(갱신)시 YES큰기쁨 정기예금점장기간별이율 [B]경과기간별인정율:(경과기간-3개월)/계약기간 단, 변동주기 상품중 변동주기 만기시 확정되는 상품은 구간별 적용이율(YES실세이율정기예금)	
만기후 이율	• 3개월이내: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고시금리의 1/2 • 3개월초과: 만기시점 해당 계약기간 고시금리의 1/4 • 1년 초과 : 만기시점 보통에금 금리		
분할해지	이 예금은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 다만,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.		
기 타	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제도 및 당행이 수탁자인 퇴직연금계약(이하 퇴직연금계약)에서 인정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(인출 포함)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퇴직 등 급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- 퇴직연금제도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중도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•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•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•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• 그 밖에 천재·사변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-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특별중도해지 사유 발생하는 경우 -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시 - 퇴직연금제도의 동일 사업자내의 제도 전환 - 개인형 개인퇴직계좌의 법정요건에 따른 중도인출 사유 발생하는 경우		



계약의 해지	영업점에서 해지가능	
에금자보호역부	해당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

3 유의 사항

- **■**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.
- 기타 유의사항
 - 이 예금은 담보제공, 질권설정 및 양수도가 불가합니다.
 - 이 예금은 예금주가 요청하는 경우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되며, 약정이율을 제외한 계약조건은 직전 계약조건과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. (예금주가 사전에 재예치 의사없음을 통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재예치 하지 않음)
 - 자동재예치되는 원금은 직전 계약기간의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.
 - 본 내용은 정보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이 자체로 법률상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지는 아니합니다.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하여는 은행의 약관이나 개별 계약서를 참고하시고,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.

상품 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(민원)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(愈1544-3000), 금융부조리 신고센터(☎02-729-8177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eb.co.kr)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할